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8484

제안연월일: 2025.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의 안 명 | 의안번호 | 대표발의자 (제출자) | 발의일 (제출일) | 전체회의 상정일 |
|----------------|---------|----------------|--------------|--------------|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200787 | 강대식의원 | 2024. 6. 21. | 2024. 8. 27. |
| | 2201348 | 김병주의원 | 2024. 7. 3. | 2024. 8. 27. |
| | 2201456 | 송옥주의원 | 2024. 7. 8. | 2024. 8. 27. |
| | 2202257 | 강대식의원 | 2024. 7. 25. | 2024. 8. 27. |

-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 심사소위원회(2024.9.24.)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방위원회(2024.9.25.)에서 법률안심사소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수검 시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그리고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민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 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으로 제한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되,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나.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 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신설)
- 다.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가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판정 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는 경우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제3호 신설)
-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로 할 수 있다.
 -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세 대주, 가족 중 성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 본인을 대리 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 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 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4조의3의 제목 중 "병력동원 및 훈련"을 "병력동원소집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 "병력동원소집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

제74조의4의 제목 중 "병력동원 및 훈련"을 "병력동원소집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집된 기간"을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로, "소집"을 "병력동원소집등"으로 한다.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 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의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3조의2의 제목 중 "병력동원 및 훈련"을 "병력동원소집등"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병역판정검사 등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3, 제74조의4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 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재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5조의2(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
| |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 |
| | 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 |
| | 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
| |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
| | 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
| |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
| | 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
| | 한다)을 이용하거나 구술이나 |
| | 전화·전신·팩스로 할 수 있다. |
| |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
| |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
| |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
| |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정 |
| | 대리인이나 세대주, 가족 중 성 |
| | 년자 등(이하 "대리인등"이라 |
| | 한다)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
| |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으 |
| | 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및 |
| | 대리인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
| |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 ② |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 ② |

(생 략) <신 설>

③ (생략)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 저 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 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 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서는 그 <u>소집된 기간</u>을 결석으 로 처리하거나 그 <u>소집</u>을 이유 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2. (생략) <신 설>

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

| (현행과 같음) |
|---------------------------|
| ③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 |
| 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 |
| 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라 군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 |
| 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 |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
| 세74조의3(<u>병력동원소집등</u> 관련 |
| 학업 보장) |
| |
| |
| |
| |
| 소집된 기간 또는 검사일 |
| 병력 |
| <u>동원소집등</u> . |
| 1.·2. (현행과 같음) |
| 3.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 |
| 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 |
| 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
| |

-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 제74조의4(병력동원소집등 관련 직장 보장) -----

및 재신체검사·재검사

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u>소</u> 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리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 된 기간 또는 검사일----------<u>병력동원소집</u> 등----.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 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 유)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 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 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 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 병·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 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 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 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 리하는 정보·자료를 공개·누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 ⑧ -----제7항-----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 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 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 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 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 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 청에 따라야 한다.

| <u>7</u> | · <u>제1항,</u> | 제5항 | 및 |
|----------|---------------|-----|---|
|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3조의2(<u>병력동원 및 훈련</u> 관 제93조의2(<u>병력동원소집등</u>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